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사업본부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

1. 관련

- 가.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(법률 제13517호)
- 나.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26552호)
- 다.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)

2.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보험료의 카드 납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가. 주요내용

1) 시행령

- 가)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4조,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6조)
 - 위원회 구성, 위원 자격요건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 해촉, 분쟁조정 절차

2) 시행규칙

- 가)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(안 제41조제3항제4호, 제56조제2항)
 - 보험증서 기재사항 및 환급금 지급 시 주민번호 수집 조항 삭제
- 나) 보험료의 카드 납입 근거 마련(안 제47조제3항)
 - (現) 수금원 납입, 창구 납입, 계좌이체 납입 → 카드 결제 추가
- 다) 재보험사 대상 확대(안 제60조의3)
 - (現) 금융위 허가받은 보험사 → 금융위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 추가
- 라) 알기 쉬운 법령 정비(안 제63조제2호)
 - (現) 관서보상금 → 관서 영업지원금

나. 추진일정

- ☐ 부처협의·입법예고(2~3월),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(4~5월), 공포(5월)

- 붙임 1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 추진(요약) 1부
2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 1부
3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1부. 끝.

주무관	이강호	행정사무관	전영찬	보험기획과장	신대섭	보험사업단장	김정각
본부장	01/29 김기덕						
협조자	금융총괄과장	박태희	경영총괄담당관	민재석			

시행 보험기획과-313 (2016.01.29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
전화 [044-200-8618](tel:044-200-8618) /전송 02-200-8791 / hotwind1125@koreapost.go.kr / 공개